

일본에 있어서 행정관점에서 분쟁처리를 위한 스포츠 법의 역할

정성범*, 조학래**

I. 서론

현재 스포츠와 관련된 분쟁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스포츠 관계자들의 권리의식의 향상에 따라 분쟁의 건수도 점차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분쟁이 법원에서 다루어질 사안도 점차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 분쟁사건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적 해결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형태의 재판 외의 분쟁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결방안들 가운데 하나로 한국의 경우 스포츠중재위원회((Korea Sports Arbitration Committee)의 역할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포츠경기자와 스포츠경기단체 등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스포츠 중재위원회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본고는 우선적으로 스포츠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의 유형과 특징을 일본을 중심으로 하여 정리하여 본다. 구체적으로 스포츠 분쟁의 개념, 종류, 기능 등에 대해 검토해 본다. 그리고 일본의 스포츠 분쟁의 성질과 스포츠의 본질, 고유법이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스포츠 법의 분쟁처리 기능

1. 분쟁과 事故

스포츠 법의 분쟁처리 기능은 스포츠에 있어서 분쟁과 사고에 대한 것이다. 스포츠는 분쟁과 사고로 인해 스포츠의 순조로운 진행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분쟁과 사고는 다른 모든 요인 즉, 관계자의 반대나 외부의 압력, 자연의 악조건이나 재해 등과는 다른 공통성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공통성이란 분쟁과 사고는 예측이 있든 없든 바라지 않는 사태로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스포츠 상호간의 불가분의 인과관계에 있어 스포츠의 순조로운 진행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분쟁과 사고의 완전한 예방이 필요하며, 그것이 안된다면 신속한 사후처리가 요청된다 하겠다. 그래서 이 요청에 응하는 현명하고 적절한 방법은 규제라 할 수 있으며, 이 규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분쟁과 사고의 사후처리의 방법일 것이다.

이 분쟁과 사고의 규제를 담당하는 사회 규범에 있어서 관중의 행동이나 팬의 태도에 대해서는 주로 도덕과 관행(관습)이 작용하고 그 다음으로 국가법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 스포츠의 핵심인 운동선수의 스포츠 행동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스포츠룰(rule)과 스포츠 법이념이 작용한다.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스포츠 행사의 근거인 스

* 투고일 : 2014. 6. 30. 심사일 : 2014. 7. 30. 게재확정일 : 2014. 8. 30.

**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같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스포츠분쟁 해결기구가 없다. 2006년 5월 발족했던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3년 여 만에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포츠 단체협약이 있지만 그 어떠한 규제라도 배경에는 역시 국가법이 있다는 것이다. 스포츠에 있어서 국가법은 최후의 보루이고 제2차적으로 작용하며, 上記 3종인 스포츠 룰, 법 이념, 스포츠단체협약의 스포츠 고유법이 제1차적인 적용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법에 의한 규제는 특히 민법의 기능을 통하여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된 문제인 스포츠에 있어서의 분쟁과 사고에 대해 제1차의 규제를 담당하는 스포츠 고유법의 기능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얻고자 하는 명확한 정답을 산출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고에 대해서는 많은 보고나 논의가 학계에서 연구되어지고 그리고 제출도 되고 있지만 분쟁에 대해서는 그 연구가 희귀하고 하물며 양자 즉, 분쟁과 사고를 종합하는 것에는 괄목할 만한 연구의 축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 분쟁과 사고란 인과관계에 있는 것처럼 회자 되지만 논리적으로는 무관계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거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를 일괄하는 논의에는 양자가 서로 다른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한 해명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연구에 대한 것도 학계에는 거의 연구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가능하면서 효과적인 것은 분쟁과 사고를 일거에 논하는 것보다도 이 논의 후의 발전을 위한 기초 작업을 착실히 하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이다.

따라서 분쟁과 사고 양자를 이 논의 이후 미래에는 일괄하여 고찰해 볼 수 있다고 밝은 희망을 가지면서 우선 양자를 따

로 구분하여 연구하는 것도 그러한 기초 작업의 중요한 하나일 것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쟁을 다루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기에 분쟁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스포츠에 관련한 분쟁의 문제성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에 있어서 분쟁이 연구대상이 되지만 이것을 스포츠에 관련한 분쟁으로 넓게 해석하고자 한다. 전자 즉, 스포츠에 있어서 분쟁은 통상은 협의로 특정 스포츠 진행 중의 분쟁과 그 전 후의 혼란현상(예를 들면 격투)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종류의 분쟁이 문제의 전형적인 예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후자 즉, 스포츠에 관계하는 분쟁이라고 넓은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일반 사회에는 훨씬 많은 스포츠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스포츠의 운영을 둘러싼 관계자간 혹은 스포츠 단체의 내부나 상호간, 더욱이는 관계하는 행사·시설·정책 등을 둘러싼 관계자간, 여러 가지의 마찰·대립·갈등·紛議·충돌이 현실로 종종 일어난다는 것이다. 또 사회현상으로서 여론 혹은 통계에 나타나는 잠적적인 스포츠와 관련한 분쟁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것 중에는 법률학에서 다루는 분쟁의 개념을 좁게 한정하게 될 경우, 분쟁에서 제외되는 것도 있지만 스포츠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제외됨으로서 일어나는 사회질서의 혼란은 스포츠 사회학의 관점에서는 모두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스포츠에 관련하는 한 모든 스포츠와 관련한 사회적 분쟁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연구를 하고자 한다. 스포츠와 관련한 분쟁의

* 寒川恒夫, スポーの民族性と 普遍性, スポーと いう文化, 所收, 1992, pp. 92-96.

유효한 고찰은 사회적 분쟁의 이론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학계에는 그 이론에 공통하는 定說을 만들어 낼 정도의 관심이 없다는 전제하에 본 연구자는 연구하고자 하는 분쟁이론을 적용하면서 수정하는 형태로 스포츠 분쟁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자 한다*.

1) 분쟁에 대한 개념의 다양성

분쟁에 대한 諸關係 개념을 이하의 규정에 따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分爭은 사회질서에서 생기는 혼란을 총칭하는 것으로 여기에서의 분쟁은 결국 사회적 분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하 유사한 개념을 설명하면 對爭은 양 당사자가 상호 지배하는 가치를 빼앗고 또 지키기 위한 공격 방어를 의미한다. 이 諸 하위유형 중 언어에 의한 爭論은 실행사 억제라는 공통의 규범이 전제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이다.

競爭은 셀 수 있을 정도의 복수의 당사자가 외부에 있는 특정가치의 우선취득을 겨루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모든 당사자가 특정가치를 존중하는 것과 상호의 공격을 억제하는 것에 이미 공통규범이 작용하고 있다.

混爭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당사자가 특정 목표가 있어도 없어도 일어나는 혼란을 의미한다.

법적 분쟁은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국가법상과 스포츠 고유법상의 두 형태 즉, 법률적 분쟁과 스포츠 분쟁으로 나누어진다. 법률적 분쟁은 국가법상의 법률적 분쟁처리제도에 익숙한 분쟁으로 조건이 법률상 한정되어 있다. 스포츠 분쟁은 스포츠에 관련하는 사회적 분쟁의 총칭으로 다음의 2종 즉, 스포츠 내 분쟁과 스포츠 외 분쟁으로 나누어진다. 스포츠내 분쟁이란 스포츠 고유법에서 처리되는 분쟁으로 사회적 분쟁의 특수한 예를 의미한다. 그리고 스포츠外 분쟁은 스포츠 고유법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 분쟁으로 전형적인 사회적 분쟁을 의미한다.

분쟁처리란 분쟁에 의해 발생한 혼란의 제어와 질서의 회복을 꾀하는 사회적 대응을 의미한다. 분쟁처리수단이란 분쟁처리에 유효한 개개의 수단으로 사회적 제도와 법률적 제도가 있다. 분쟁처리제도란 분쟁처리수단 중 사회제도 혹은 법률제도로써 정비된 것을 의미한다.

Ⅲ. 스포츠 분쟁의 종류와 스포츠 법의 적용

1. 스포츠 분쟁의 종류

스포츠 분쟁 종류의 구체적 예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본 연구에서 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지상의 분쟁 기사를 관련 자료로 하여 스포츠 법이 얼마나 관련되고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이 자료를 토대로 한 스포츠 분쟁의 유형이 개괄적으로 기본적

* 유감스럽지만 국제경기에서 일본이 커뮤니케이션의 부족으로 불리한 경우가 때때로 있다 (예를 들면 1991년에 국제유도연맹이 오픈화를 가결했던 것을 일본유도연맹은 1993년이 되어서야 알았다, 1993년 월드컵에서 스키점프 선수가 예정시각변경을 몰랐다 등). 이 사례에는 과실이 전면적으로 일본 측에 있는 것으로 항의의 여지없기 때문에 분쟁이 되지도 않았다.

** 寒川恒夫, 스포츠法-스포츠의 概念, 스포츠ジャーナル, 12月號, 1996, pp. 32-36.

인 세 종류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단 對爭形態는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음에서 다룬다*.

우선 混爭形態에는 스포츠 행사의 진행 중에 응원단이나 관중 등의 팬 또는 반사회적 집단이 대회장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분쟁**과, 행사 후에 팬이 흥분하여 일으키는 분쟁*** 등이 있다. 그 전자의 경우에는 스포츠 내의 분쟁의 예로 회장관리나 팬의 매너에 결함이 있는 경우, 스포츠 고유법 중의 단체협약과 법 이념을 적용하여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모두 완벽하게 해결되거나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다른 고유법인 스포츠 룰과 이 사건과는 관계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의심 없이 스포츠外 분쟁이다. 따라서 양자가 동시에 국가법의 대응이 요구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일시적인 과열이 식으면 사건은 자연히 수습되기 때문에 과도한 대응은 적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단 과열의 원인 내지 誘因에는 스포츠의 본질적 세 요인의 하나인 특유의 상징적 양식이 작용

하고 있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경쟁 형태를 고찰함에 있어서 세 부문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선 구별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스포츠 바로 그 자체가 경쟁이라는 의미다****. 이미 스포츠는 그 자체의 형태로서 양자가 대항하는 對爭형태와 다수가 겨루는 경쟁형태의 둘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 前者도 실은 후자의 형태 즉, 다수가 겨루는 형태로 轉化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는 모두 경쟁의 형태로 행해지고 있지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상징적 양식을 다른 두 요인(일정한 규칙과 신체행동에 의한 경쟁)에 의해 규제되어 사회적 경쟁이 변질되었으며, 그 반사회성이 합법화하기 시작하였다. 더 나아가 오히려 장려하는 것으로 轉化되어 하나의 질서현상으로 고착화 되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이 의미의 스포츠 분쟁은 오히려 스포츠 본질론의 문제로 부각되었으며 분쟁론의 논의에서 멀어진 것으로 보여 진다는 것이다.

둘째, 선수 개인이나 팀 또는 팬의 상호간에 일어나는 경쟁(예를들면 선수간의 포지션 경쟁, 팀 간의 승리경쟁, 팬의 싸움 등)이지만 이것이 스포츠에서는 오히려 필연적 현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 내 분쟁으로 여겼으며, 너무 과한 것은 사회문제(예, 기합, 우수선수의 빼내기)가 되었다. 그리고 드물게 스포츠外 분쟁(예, 피겨스케이팅 낸시 캐리건 사건 등)으로 발전하는 것이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분쟁은 전자와 같은 분쟁론 보다 오히려 스포츠 본질론의 문제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 개개의 분쟁을 분석하면 분쟁의 주요한 네 가지 요인 즉, 당사자·참가자·개입자를 포함한 분쟁관계자, 객체·지위·태도에 심볼을 더한 분쟁대상, 구체적 행위·수단·주장에 의한 분쟁행동 및 正負의 에스컬레이션에 환경·시스템효과·제도화를 포함한 전체적 요인에 의해야 할 것이다.

** 예를 들면 경마장이나 競艇場에서의 혼란, 홀리건의 축구장 교란, 베를린 올림픽 대회의 검은 구월단 사건 등을 의미한다.

*** 예를 들면 와세다早稻田大學과 케이오慶應大學의 라이벌 야구시합 후에 있었던 거리의 소란과 브라질에서 1994년 월드컵 우승 축하 때문에 27명이 사망한 사건 등을 의미한다.

**** 稻垣正浩, スポーツの後 近代-スポーツ法文化はどこへ行くか, 三省堂, 1995, p. 42.

셋째, 스포츠 단체가 관련된 경쟁으로 스포츠 행사의 개최지(예를 들면 올림픽이나 전국체전의 유치 등), 상금·상품류(예를 들면 스폰서가 후원하는 대회 등), 대회장 설비의 정비개선(예를 들면 경기장·축구장의 건설개량 등) 등의 경쟁, 혹은 스포츠 단체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사나 운영을 둘러싼 경쟁 등이 있다. 이런 분쟁의 대부분은 스포츠 관련 단체의 방침에 의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스포츠단체 협약에 의해 처리되는 스포츠 내 분쟁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분쟁이 스포츠 법 이념에 의하여 爭論이 때로 일어나는 일은 있지만 중대한 스포츠 외 분쟁에 이르는 일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2 스포츠의 경쟁 형태(對爭形態)의 분쟁

1) 계약에 관한 분쟁

스포츠는 순수하게 개인적인 경우도 있지만 단체의 일원으로서 또 단체협약에 의한 행사로서 사회활동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떠한 계약이 전제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계약에 있어서 아마추어에서는 관례에 따르거나 口頭나 묵시에 따르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도적의 인식되는 계약의 건수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후술하는 분쟁의 사고가 일어날 경우 지도자·관리자·자원봉사자 등의 책임을 묻는 것 때문이다. 프로나 세미 프로에는 공식적인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계약 체결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본에는

드물게(예를 들면 에가와江川 선수의 요미우리 타이거즈 입단문제 등) 분쟁의 문제에 변호사의 관여기피 등의 경향 때문에 일본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일본적 경향성의 문제가 일본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좋은 관례와 계약방식의 수립을 제도화 해야하는 중요 과제도 남아있다. 여기에 앞으로 스포츠 법학의 임무가 보여진다.

2) 사고에 근거한 분쟁

스포츠의 진행 중에 사고가 일어나면 주최자·관리자는 그 원인을 구명하여 책임 소재를 확정하여 사후처리를 할 책무를 진다. 사후의 처리로서는 물에 따른 심판의 결정 혹은 단체협약에 의한 관리자의 裁定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스포츠 고유법의 적용에 의해 종결하는 일이 비교적 많이 있지만, 책임의 귀속 여부에 따라서 처리의 방법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는 경우가 많으며, 진행의 정도에 따라 법률적으로 다루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이것은 종래의 스포츠 법학이 최대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그리고 그 지식 등이 축적되어 성과도 어느 정도는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로 볼 때, 사고의 예방은 물론 법적 책임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하는 등을 대책을 위해 사전의 철저한 예방과 특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예방교육이 스포츠계에 계속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포츠 법학은 이것을 특별히 중요시하여 예방 법학 혹은 응용 법학이 실효를 올릴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 佐藤千春, 競技者の 權利と 義務, 年報 1, 1994b, p. 94.

* 斎藤 他編, スポーツ 安全管理の 要點, 事故事例, 判例, 東海大學學務部, 1993, p 13. 이나 中田, 다이빙의 事故, 法的 責任と 問題, 杏林書院,

3) 스포츠 rule에 관한 분쟁

스포츠 rule에 대해서는 개정과 폐지 등의 분야에 있어서 분쟁이 일어나기 쉽다. 룰의 개정이 있을 경우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 진행이 된다면 의견의 대립은 일어날 수 있지만 룰의 개정에 대한 문제나 분쟁이 일어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예를 들면 신체장애자를 위한 야구나 농구 등) 당사자 간의 자체로 분쟁까지는 발전하지 않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스포츠의 진행방법(예, 야구의 시간단축, 축구에서 서든데스의 채용 등)이나 용구·시설(예, 컬러 유도복, 야구장의 넓이 등) 등에 대해서는 특히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별하게 심각한 분쟁으로 발전하기 쉬운 것은 룰을 적용함에 있어 강경한 異論이 제기되거나 또는 이미 확립되어 있는 스포츠 룰을 단체의 협약으로 개정하고자 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심각한 분쟁이 빈번한 것은 현행 룰에 위반하는 행위 즉, 반칙 행위 혹은 반칙의 유무를 둘러싸고 감독이나 상대 팀이 심판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경우이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분쟁 대부분은 항의를 하는 경우이며, 격투의 경우 판정의 문제로서 심판의 결정에 의해 현장에서 바로 항의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事後에 관계 단체 간의 분쟁에 의할 때에도 상부기관의 裁定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에 스포츠 룰 또는 스포츠 단체협약의 적용의 문제에 그치고 만다(예를 들면 야구·축구 기타의 심판, 스모(일본씨름)의 異議提起, 복싱의 판정문제 등). 따라서 그러한 분쟁은 당초

는 룰의 위반으로 발생하였지만 곧 룰의 준수로 처리되기 때문에 스포츠 내에서의 분쟁은 발생하지만 사회적 분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회적 분쟁이라 할 수 있는 스포츠 외적 분쟁으로 발전하는 것은 예를 들면 자격문제에 대해 스포츠 고유법에 의한 최종판정의 결과에 불복한 당사자가 항의를 계속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 예를 들면 여러 종류의 스포츠에 있어 아마추어와 프로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아가 오픈을 할 것이냐의 문제, 출장자격의 유무(예, 스기나미의 야구팀 출장 정지사건, 케냐의 세계기록 보유자의 국내예선을 거치지 않고 국제경기대회 출장한 사건 등), 국적의 조건(예, 고교 여러 대회에 외국국적 학생의 참가, 남아프리카 선수의 국제시합 참가 거부 등), 약물 사용(예, 벤 존슨(육상), 디에고 마라도나(축구), 동독이나 중국 선수의 문제 등)이나 부정행위(예, 競艇이나 競輪 등의 담합이나 買收 등), 혹은 그러한 행위들에 대한 의심(1993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의 페이스 메이커, 서울올림픽 때의 복싱 심판 등)과 그것을 이유로 하는 자격정지·제명이나 명예박탈 등등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도 많은 부분이 스포츠 법 이념을 추구하여 스포츠 단체협약의 기능에 알맞게 자주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분쟁이 사회적 그리고 때로 법률적으로 까지 나아가는 것은 자격박탈·국적과 범죄의 문제에 거의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동일한 스포츠의 룰이 적용상에 있어 모순되어 분쟁에 이르는 일이란 스포츠의 성질상 통상은 있을 수 없지만, 종종 이것을 적용·관리하는 단체가 다르면 분쟁이 발

2001, pp. 21-30과 같이 기획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생하는 경우가 있다(예, 일본 프로복싱 타츠요시 선수의 권투안전 룰에 대한 것으로 국내와 국외의 대립이 발생하는 등). 룰 간의 모순은 서로 다른 종류의 스포츠 사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지만(예, 좁은 운동장에서 경합하는 여러 종류의 스포츠 연습에 의한 사고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 한 경기장을 축구와 육상의 다른 두 종류의 스포츠 경기장으로 만들 때의 규격의 문제 등) 대부분 관계자의 합의로 처리할 수 있는 스포츠 내의 분쟁에 그치기 때문에 사회적분쟁인 스포츠 외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4) 스포츠 단체에 의한 분쟁

위에서 설명한 스포츠 룰에 관한 분쟁의 여러 예에서는 스포츠 단체협약이 직접간접으로 관계하는 일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스포츠 단체를 一方 또는 雙方의 당사자로 하는 분쟁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포츠 단체가 사회적 존재로 활동하면서 분쟁에 휩쓸리는 경우는 하나의 사회적 필연이라는 것이다. 스포츠 단체의 내에 선수가 지도의 방침이나 처우에 대하여 지도자 또는 팀·단체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그 사례는 무수히 많다. 그리고 그것이 선수단과 단체관리자와의 집단적인 분쟁으로 확대되어 사회적으로도 큰 화제가 되는 일이 있다(예, 戰前 스모(일본 씨름)에서 천룡선수 등이 일으킨 개혁운동, 미국 메이저리그의

파업 등). 또 단체의 인사나 운영방침들 둘러싸고도 단체내부에는 대립이나 분쟁이 발생하는 일도 종종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스포츠 단체의 상호간에는 이른바 병행하는 단체 간(예, 팀 사이의 선수의 빼내기, 아마와 프로의 대립 등), 연합체 안에 상부단체와 하부단체와의 사이 등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일이 있다(국제관계에서 단체간의 분쟁은 아래의 국제적 분쟁에서 언급한다). 그리고 때로는 단체와 팬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예, 일본 프로축구 카와사키 베르디의 이전 소동, 닌텐도의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시애틀 매리너즈 매수 소동, 문부대신(한국의 교육부장관)이 일본 씨름 스모의 여성차별에 異論 제출 등). 그러나 이런 분쟁도 스포츠 외적 분쟁 더구나 법률적 분쟁으로 발전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5) 환경에서 발생하는 분쟁

현대 스포츠가 대중화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사회환경 사이에 스포츠로 인한 문제를 일으키는 일도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 전형이 스포츠가 공해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렇다고 비판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 예에는 소음과 교통정체를 시작으로 쓰레기·야간조명·빛나간공(골프) 기타 스포츠 행사 중에 여러 가지 영향이 근린의 평온을 어지럽히는 사건 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스포츠 시설의 건설에 있어서도 자연파괴(예, 특히 골프장 등), 토지의 오염(예, 잔디보호의 제초제에 의한 것 등), 도덕적 영향(예, 경륜장이나 경정장의 건설

* 寒川恒夫, スポーッ法-スポーッの概念, スポーッジャーナル, 12月号, 1996, pp. 22-45.

** 佐藤千春, 團體による不利益處分と救済の構造-特に スポーッ團體と會員の關係を中心にして, 慶應大學, 法學研究 60, 2, 1987, pp.87-93.

등)과 기타 환경파괴를 이유로 환경을 지키자고 하는 환경운동자가 건설업자와 분쟁에 빠지는 일이 많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분쟁이 발생 된다. 시설건설의 자주규제(自主規制)를 둘러싼 분쟁은 많지 않지만 그 예가 존재한다(예, 복싱 손일본 협회가 체육관 건설에 이웃 체육관 3곳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던 규정이 1993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취소되어 철폐된 일 등).

그 외에도 스포츠 시설의 이용을 둘러싸고 관리자와 이용자 사이(예, 야구장 등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한 고충, 谷川岳의 등산 대피소의 색깔에 대한 登山人の 항의 등), 스포츠의 활성화에 따른 마스크들의 이권(예, 방영권의 쟁탈, 촬영에 따른 인권침해의 항의 등) 등 여러 가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은 대체로 오히려 스포츠의 효용을 높이기(예, 축구에 의한 마을 살리기 등) 때문에 분쟁으로 발생한 결과는 단순히 스포츠 내의 분쟁으로서 쉽게 해결되는 것이 통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중요한 것은 스포츠의 존재 의의에 깊게 관계있는 분쟁도 있다는 것이다. 즉, 스포츠 그 자체가 안전이나 환경을 침해하는 경우(예, 타테야마나 오세의 입산규제 문제, 해수욕장의 안전규제 문제 등) 이거나 해당 지역의 산업과 충돌하는 경우(예, 해양 스포츠와 어업 등) 등이 중요한 분쟁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단지 규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스포츠 철학의 사회적 확립이 요청되고 있다는 점이다.

6) 공적 규제에 관한 분쟁

스포츠의 환경이나 존재의 의미에 대해 문제가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규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규제의 可否 혹은 양상이 논의의 목표가 되고 그 결과 언론에 의한 분쟁 즉 爭論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논쟁에 대해 스포츠 기본법인 국가법 내지 스포츠 정책에 관계하여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논의에서 다루기로 하고 본 논의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그렇지만 일정한 부분은 약간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기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행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한을 가지는 만큼 그 권한이 분쟁의 이유로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사정과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국가는 입법권과 외교권에 관한 것 즉, 예를 들면 스포츠 장려금에 대한 과세의 가부(예, 올림픽 메달리스트에 대한 JOC의 신청에 反하여 과세 등), 스포츠 복권의 문제(예, 축구 복권법 등), 외국인의 처우(예, 1994년 마라도나의 입국거부와 같은 해 아시안 게임에서 대만총독 초대거부 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스포츠를 금지하는 문제도 외국에는 있지만(예를 들면 1994년에 영국에서 복싱 금지법과 여우 사냥금지법안 등) 일본에는 없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분쟁들은 많은 부분이 의론

* 中村敏雄, 스포츠權의意義と課題, 季刊教育法, 37, 1980, p. 98.

** 寒川恒夫, 스포츠法-스포츠의 概念, 스포츠 저널, 12월號, 1996, p. 49.

의 대립 즉 쟁론이며 그 결정권은 공적 기관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정치적 결정이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분쟁이 길어지고 곧 그 문제는 국제적 분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7) 국제적 분쟁

국제적인 스포츠 분쟁은 다른 많은 분쟁에 비해 오히려 상식적으로 많이 발생한다. 미국과 소련의 1980년과 1984년 올림픽 불참 등과 같은 국제대회의 보이콧과 남아프리카 선수들의 올림픽 참가 거부가 대표적인 예들이다*. 그러한 분쟁의 발생 사례는 정치적인 요인이 원인이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는 개선되었다. 그렇지만 다른 원인으로 이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컬러 유도복, 스키 채점방법의 복잡성 등 룰의 개정, 도핑이나 마약상습복용자의 거부 등 국제적 스포츠 행사에 출장여부의 관련 건과 올림픽과 축구 세계대회 등의 개최에 대해 종종 분쟁이 발생한다. 이 분쟁이 스포츠 분쟁이 아닌 스포츠 외 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국제정치이거나 국가규제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 그 외에는 스포츠 내 분쟁으로 스포츠 고유법의 규제로 처리되기 때문에 분쟁이 별 문제없이 해결된다. 그리고 스포츠 내 분쟁은 대부분 정보부족 또는 오해로 생기는 분쟁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스포츠로 인한 국제관계에는 분쟁의 원인이 되기보다도 관계의 개선과 발전

에 공헌하는 편이 현저할 뿐만 아니라 1994년 축구 월드컵 기간 중 르완다의 내전 휴전과 그 해 앙골라의 올림픽 휴전을 UN이 결의한 것 그리고 브라질 축구선수 지코가 일본 카시마의 명예 시민이 된 것 등 평풍외교의 예를 보는 것 같이 스포츠의 국제적 분쟁이 관계개선과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것이다.

3. 스포츠에 관한 분쟁의 성질

위의 설명들은 스포츠에 관한 분쟁의 當面的 일반적인 설명에 대한 것이지만 분쟁의 대한 스포츠 법의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미가 있음을 알았을 것이다. 즉, 스포츠에 관해서는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대부분은 스포츠 고유법의 규제에 의해 예방·처리되는 스포츠 내 분쟁이며, 그것을 넘어서 사회적 문제 나아가서는 법률적 문제라는 스포츠 외 분쟁까지 발전하는 것은 대부분 자격문제의 인가와 사고·범죄의 인가에 한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사이에 명확한 사실은 사회적 분쟁을 그것(자격문제의 인가와 사고·범죄의 인가)에 한정하고 있는 스포츠 고유법은 비공식이지만 효과적으로 법으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 분쟁이 매스컴의 화제가 되는 것은 그 분쟁이 심각하기 때문이라기보다 스포츠의 본질적인 상징적 양식성이라는 異質인 현상이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스포츠 고유법의 기능은 우선 스포츠 룰이 스포츠의 조건과 진행규칙을 엄밀하게 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룰에 대한 위반이 있어도 이것을 심판의 결정에 의해 그 자리에서 반칙으로서 처리하는 등의 조치에 의해 합법화된다는 특색이 있다는 것

* 佐藤千春, 國際競技團體による 競技者の 制裁-その構造と 救済の 法理, 慶應大學 法學政治學論究, 21, 1994 a, p. 19.

이다. 둘째, 스포츠의 단체협약이 단체의 조직과 운영을 명확하게 정하거나 분쟁처리제도를 법률적 제도의 정도로는 정비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관리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에 대한 룰을 정하여 위반이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처리하려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므로 그것을 정비하지 않음이 때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스포츠 법이념은 스포츠인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과 그리고 만일 분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당사자가 자제하여 즉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취지를 명백하게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구조는 스포츠를 가능하게 하는 고유법이 조직규범의 아래에 행위규범과 整序규범의 重層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여, 따라서 그것은 법으로서 종교법**과 나란히 할 정도로 정비되어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스포츠 고유법은 그 의미에서 스포츠 內 분쟁을 처리하는 제1차의 법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분쟁처리기능을 가진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스포츠의 본질을 반영하고 있

* 법의 重層構造論은 예리히와 켈젠의 행위규범과 재판규범과의 이중구조론에서 시작하여 제2차 세계대전 전부터 戰爭 中인 일본에서 廣濱嘉雄과 尾高朝雄이 조직규범을 더해 삼중구조론이 되었다. 이 문제는 그 후 법 철학계에서 잃어버렸지만 사회 안에 법을 자리 매김하고자 할 때에는 더욱 示唆하는 바가 많은 관점이다.

** 종교법이 정통권위의 아래에 조직·행위·整序(裁決이라고도 말한다)의 세 규범을 갖춘 고유법인 것은 캐논법 뿐만 아니라 다른 諸 그리스도교회법이나 이슬람법·유대법 등의 정비방식에 따라 구조화되어 있다. 일본의 불교나 神道の 諸 派도 그 나름대로의 조직적인 고유법에 따르고 있다.

다는 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IV. 스포츠의 본질과 고유법의 기능

1 스포츠 고유법의 분쟁이론으로서의 특성

스포츠의 전체적인 본질론에 대한 이해를 제외하고 분쟁론의 측면에서 볼 때, 스포츠의 원점이 격투기라는 것이 시발점이 된다. 격투는 사회적 분쟁의 측면에서 볼 때, 對爭形態에서 전쟁과 같은 인간 분쟁의 주요형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에게 이기려고 하는 격투자의 행동과 심경에 있어서는 경쟁형태의 경쟁자에게도 공통적이기 때문에 격투정신을 가지고 하는 특정행동이 對爭形態(예, 스모·권투·야구·축구 등)와 경쟁형태(예, 각종 시합·경기·대회 등)등을 묻지 않고 모든 스포츠에서 기본적인 본질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스포츠의 문화가치다. 기량은 스포츠 플레이어 혹은 팀이 체득하는 기술·기능·기예·전술·전략의 종합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예의성은 스포츠 행사가 룰의 실천을 통하여 顯示하는 상징적 행동이며(大林 1986참조) 또 광의의 의미에서 예술성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스포츠는 이 양 가치 모두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플레이어 본인은 실현을 했을 경우 그

*** 개인 스포츠라든가 시민 스포츠라든가라고 하는 스포츠에는 매우 높은 수준의 격투정신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기량·儀禮性 등은 스포츠 정신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과 그 후의 만족감을 이념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결과에 만족해야 한다. 그리고 관중·팬은 그 플레이어의 양 가치에 대해 우열의 차를 비교하여 즐긴다. 이러한 특정행동양식의 가치를 이념으로 하는 것이 스포츠 행사의 결정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일반인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이념은 다양하다. 예를 들면 도덕과 종교가 그 예이다. 이 이념은 일반인에게서는 실행이 어려울 정도로 높은 이념이라 할 수 있다. 이 이념과 비교해 볼 때, 스포츠는 다양한 이념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이지만, 개인 본연의 내심의 자세보다도 구체적 행동으로, 또는 가치나 이념 그 자체보다도 그 실현에 대한 개인의 주체적 노력과 그 객관적 비교를 중시하는 점에서 사회적 행동에 대한 이념과는 차이가 있다*. 사회적 관계를 일반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규제하는 임무를 가지는 국가법은 그 이유 여하에 따라 이것을 일반인을 기준으로 행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실행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이념을 강제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스포츠 행동의 이념에 있어서 개인 스포츠나 시민 스포츠에는 본인의 만족이 타인과의 경쟁에 우선한다고 해도 이 스포츠 이념을 어느 정도는 포함한다. 그리고 스포츠 경기에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쓸 정도로 높은 이념을 포함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고 규제하는 것이 스포츠 고유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스포츠 고유법은 도덕·종교법이나 국가법과도 다른 특질 및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에서 분쟁이론으로부터 구별되는 스포츠 고유법의 본질적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즉 스포츠 고유법은 사회적 분

쟁의 기초적 형태인 신체적 對爭형태의 격투를 스포츠 법이념 아래에서 기량을 발휘하여 경쟁하게 하고 그리고 예의성의 발휘를 목표로 한 스포츠 행동으로 변환하였다. 이와 동시에 그것을 가능케 하는 행위규범과 스포츠 내에서 생기는 분쟁을 예방·처리하는 整序規範등을 스포츠 룰로 체계화하여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규범으로서의 단체협약을 파생시켰다. 특히 분화와 종합에 의해 조직적인 체계를 발전시켰다. 그것이 곧 법인 것이다. 즉, 인간 활동으로는 한정된 一面인 스포츠를, 실제로 세계에 참가하는 인원수로는 방대한 사회활동으로서 전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그래도 그 중에 분쟁처리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여 법체계로서 구성된 것이다. 물론 그 분쟁의 예방·처리기능에 완전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이 규제하기 어려운 분쟁들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할 정도로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그래서 최후는 국가법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도 많았다. 그러나 사회에 비공식이면서 자주적으로 존재하는 인류의 법인 종교법과 비유하여 볼 때 스포츠 법은 룰이 잘 정비되어 잘 준수되고 있으며, 분쟁의 예방·처리의 機構·기능 또한 잘 갖추어져 있어서 그 결과인 사회질서에 대한 공헌도는 종교법에 못지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적 분쟁처리제도의 발달

우선 사회적 분쟁처리의 일반이론에서 주장하는 중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로 질서(법)과 분쟁의 연속성이론, 즉 분쟁과 분쟁에 대한 처리는 학문상으로는 다른 문제·다른 개념으로서 취급한다.

* 今村浩明, 文化としてのスポーツ, 影山健他編, 國民スポーツ文化, 大修館書店, 所收, 1977, p.124.

그러나 사회의 실재로서는 동시존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볼 때, 사람(人)이 분쟁이라고 말하면 이것을 죄악시하여 진압하고자 하는 관점이 우선 작용한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분쟁도 現狀의 비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의가 있으며, 오히려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관점도 있다. 이 모순되는 두 관점을 조정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의 지혜가 필요하다. 즉, 이미 발생한 분쟁을 해결한다고 할 때 우선은 주위와 당사자에게 미치는 재해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를 집행한다. 분쟁이 계속될 경우 당사자에 의한 자주적인 종결 나아가서는 現狀의 개선을 꾀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것이다. 이 방법이 분쟁처리의 수단이다. 따라서 사회에 현실로 일어나는 분쟁은 모두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 규제 즉 사회적 분쟁처리 수단의 적용하에 발생·진행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분쟁은 그 처리수단과 동시에 존재인 것이다*(千葉 1980을 참조).

이 처리수단이 관행으로서 자각·整備된 것이 사회적 분쟁처리제도이다. 따라서 분쟁규제의 수단이 성립 발전하는 것은 분쟁과 분쟁처리수단의 양자를 합쳐서 제도화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분쟁처리제도는 분쟁을 일정한 규제 하에 진행시키는 분쟁제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제도가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어

서 유효하다는 것이다. 역사가 길고 광범한 인류사회에서 분쟁처리수단은 많은 사례가 무수하게 발생했으나 그 중에는 실효성도 적을 뿐만 아니라 제도라고 부르지 못할 정도로 미흡한 것이었다. 그러나 인류학과 法史學은 유효한 수단 내지 제도의 많은 사례를 수 없이 보고하고 있다.

우선 제도의 시작은 실력 행동을 정지시켜 분쟁을 멈추도록 영향력 있는 사람이 권고하는 것으로 부터이다. 그 예로 처음의 제도로서 수행의 결과 좋지 않은 분쟁에는 부정적 제재 인 형벌을 과하며, 수행의 결과 좋은 분쟁에는 自救 특히 復讐를 인정하자는 것이었다. 단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동해보복(탈리오)의 원칙을 고수한다는 등의 고대적 미개적인 특징을 가진 것이다. 그리고 뒤를 이어 개인의 결투나 복수 그리고 정치권력의 전쟁과 화해(또는 평화조약) 등 중세적이면서 명확한 제도가 발달하였으며, 분쟁의 제도화가 점점 구체화되고 발달 진행되어 분쟁처리제도를 확립시키기에 이르렀다.

그와 동시에 분쟁의 儀禮化 즉 분쟁을 상호의 危害를 없애는 형태인 儀式儀禮의 모습에 그치는 경향이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부족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쟁형식의 의례로 결론을 내리는데 그 장소는 연회에서였으며 그 분쟁을 그 연회에서 화해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위해목적의 분쟁을 힘·지혜·유희·演藝 그리고 스포츠 등의 경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된 것이며 그 결과물이 현재의 스포츠 형태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발달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당사자끼리의 대화, 部族이나 계층의 長老에 의한 裁定, 실력자나 권력자의 개입 등이 사회의 總意 또는 권력자의 의사로 되어

* 예를 들면 개인과 국가는 싸움·전쟁을 해서 안된다고 하는 룰을 알고 있다. 그러나 만약 이를 어기고 싸움·전쟁을 함에 있어서도 그 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존중한다. 자신이 옳바르고 상대가 나쁘다고 주장하는 것도 자신이 룰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위의 인정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제도로 정착했다는 것이다. 특히 제도화되거나 의례화 된 여러 가지의 사회적 분쟁제도가 발달하였으며, 그 중에서 근대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가 재판을 전형으로 하는 법률적 분쟁처리제도다.

3 스포츠 고유법의 분쟁처리제도

以上の 사회적 분쟁처리의 수단 내지 제도 중에 스포츠 고유법이 차지하는 위치를 확인하였지만 무엇보다도 명백한 것은 스포츠 자체가 그 고유법을 가지고 있으며, 스포츠는 자체는 사회적 분쟁의 하나로 의례화하여 합법적 분쟁으로 하는 일종의 제도 즉 분쟁처리제도 라는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사회적 對爭을 위한 규제가 사회의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스포츠는 경쟁으로 변환해 있는 것이다. 사회적 對爭의 목표는 양당사자의 지배하는 가치라는 것에 대해 對爭 形態인 스포츠의 목표는 기량의 우열 내지 승리라고 하는 양당사자의 외부에 있는 가치라는 것이다. 즉 스포츠는 반사회적인 분쟁이 사회적인 경쟁형태로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對爭의 競爭化이다. 그리고 그 규제는 경쟁형태의 스포츠까지도 포함하여 거의 완전하게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점에서 볼 때 스포츠에 대한 규제에서 對爭形態와 경쟁형태를 구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무의미하다. 단지 그것이 의미가 있을려면 당연히 스포츠가 고유법의 충분한 규제하에 있는 경우에도 고유법에 의해 처리할 수 없는 분쟁에 대해서는 사회적 분쟁으로서 분류되어야 하기 때문에 두 형태의 구별은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 사회적 분쟁을 두 형태로 분류하는 의의는 對爭에 대해서는 연구가 아주 진전되고 있는

많이 거론되지는 않지만 분쟁처리를 위하여 스포츠 고유법에 내포되어 있는 중요한 기구가 있다. 멤버 체인지의 룰이 그 하나라 할 수 있다(中村敏雄 1989 참조). 그러나 그 보다는 분쟁처리에 깊이 관계한다는 것은 많은 위반을 반칙으로서 처리하여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적용 되는 룰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즉 반칙에 대한 룰이다. 이 룰은 그 본래의 도구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위반에 가까운(위반이라고 해도 좋을) 행동에 대한 스틸과 그것을 판가름 하는 심판의 처리의 기량에 의해 스포츠의 儀禮性을 높이는 상징적 기능을 가진다.

그에 더하여 분쟁처리 기구에 의해서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스포츠 분쟁에 대해서는 관계단체의 단체협약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 하에서도 처리되지 않는 많은 스포츠 外 분쟁이 남아있지만, 그것이 격하게 되면 때로는 법률적 분쟁으로 까지 발전할 정도의 일은 재판사건이나 국제문제로서 紛糾하는 일도 발생한다. 그러나 이 분쟁은 전체의 비율로 볼 때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하지만 그 필요성이 생긴 경우에는 스포츠 국가법이 등장하게 된다.

스포츠 국가법에는 스포츠 진흥법과 같은 특수법 외에 민법이나 형법 등의 일반법도 있다. 그렇지만 일본의 경우는 제 외국에 비해 현저하게 철저한 준비를 바란다.

것 외에 유효한 처리방책의 相違도 있다. 즉 처리의 重點이 對爭에는 강제적 처리보다도 양당사자의 자주적 처리를 재촉하는 것이 있어 경쟁에는 외부의 가치 없는 룰을 당사자에게 납득시키는 것(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비는 스포츠 고유법의 성질과 기구를 충분히 살리는 것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회에 적합한 스포츠 철학의 확립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스포츠 법학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상 본 연구에서 스포츠에 있어서 분쟁을 검토한 결과 한편으로는 스포츠 고유법의 성질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분쟁과 그 처리일반의 이론에도 示唆하는 바가 큰 것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 후 후속의 연구는 많은 자료를 추가하여 심화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층 진전시키는 것을 원한다.

V. 결론

스포츠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려면 법원이 아니라 중재·조정 등과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분쟁해결기구가 없는 상태이다. 이것은 스포츠 강국이면서 선진화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스포츠 발전사에서 큰 오점이므로 하루빨리 이러한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약 10여 년 전부터 분쟁해결기구를 운영하여 풍부한 이론과 경험 등이 축적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2003년 스포츠중재기구(Japan Sports Arbitration Agency ; JSAA)를 설립하여 스포츠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JSAA의 설치가 논의된 것은 1992년 '일본스포츠법학회'가 설립되어 스포츠분쟁의 처리방안을 연구하면서부터였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스포츠중재기구를 하루빨리 창설하여 신속하

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스포츠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나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判例時報 1533号, 1995.
 千葉正士·濱野吉生編, スポーツ法学入門, 東京: 体育施設出版, 1995
 小寺彰, "スポーツ仲裁裁判所", 法學教室 212号, 1998.
 千葉正士, スポーツ法學序說, 信山社, 2001.
 千葉正士, 法人類學의 可能性, 國士館法學, 1999, p.31.
 道垣内正人, "日本におけるスポーツ仲裁制度の設計" ジュリスト 1249号, 2003.
 今村浩明, 文化としてのスポーツ, 影山健他編, 國民スポーツ文化, 大修館書店, 所收, 1977, p.124.
 稻垣正浩, スポーツの後 近代-スポーツ法文化はどてへ行くか, 三省堂, 1995, p. 42.
 中村敏雄, スポーツ權の意義と課題, 季刊教育法, 37, 1980, p. 98.
 中村敏雄, スポーツの傳播·普及, 創文企劃, 1993, p. 99.
 佐藤千春, 團體による不利益處分と救濟の構造-特に スポーツ團體と會員の關係を 中心にして, 慶應大學, 法學研究 60, 2, 1987, pp.87-93.
 佐藤千春, 國際競技團體による 競技者の制裁-その構造と 救濟の 法理, 慶應大學 法學政治學論究, 21, 1994 a , p. 19.

佐藤千春, 競技者の 権利と 義務, 年報 1,
1994b, p. 94.

寒川恒夫, スポーツの民族性と 普遍性, ス
ポーツという文化, 所收, 1992, pp.
92-96.

寒川恒夫, スポーツ法-スポーツの 概念, ス
ポーツジャーナル, 12月號, 1996, pp.
32-36.

道垣内正人 , "日本スポーツ仲善" 法學教
室 276号, 2003.

斎藤 他編, スポーツ 安全管理の 要點, 事
故事例,判例, 東海大學學務部 , 1993, p
13.

中田, ダイビングの 事故, 法的 責任と 問
題, 杏林書院, 2001, pp. 21-30.

<http://www.tas-cas.org>

<http://www.jsaa.jp/>

<http://www.sportsksac.org/>

<http://www.rikkyo.ne.jp/grp/wellness>